

## 프랑스 환경법상 대기오염방지와 기후온난화대책\*

자끄린 모랑드빌레\*\*

번역: 전 훈\*\*\*

대기의 질을 위한 대책은, (범위를) 한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더 용이한 소음공해나 수질오염과는 다르게, 3차원 공간에서의 오염원의 끝없는 확산으로 인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국가처럼 프랑스도 점차적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 규제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위협의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두 가지 유형의 오염이 구별 된다: 산성비와 산화오염(les pollutions oxidantes)을 들 수 있고 이들은 다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산업, 운송, 가정난방.

산성비는 석유나 석탄의 연소에서 나오는 물을 산성화 시키는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의 대기에서 내리는 비로 발생하며, 특히 숲과 호수의 수상식물의 파괴의 결과를 가져온다. 지역차원의 오염으로서 산성비는 초기 법 규정에 의하면 거의 구속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 수 있는 바와 같이 19세기 중반의 공장매연법(la loi sur les fumées industrielles)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했는데 동법률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해 매연배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대기오염방지와 폐기물에 관한 일반법은 1961년 8월 2일 보건부에 의해 마련되었고 1964년의 “물 헌장(Charte de l'eau)”처럼 “대기헌장(Charte de l'air)”으로 나타났

---

\* 이해를 위해 역자가 임의로 추가한 부분은 본문에서 아래첨자로 표시하였다. 본문 중 \_\_(?) 부분은 역자가 번역을 하면서도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

\*\* 프랑스 Paris I 대학교 명예교수(학장), 프랑스 도시계획법학회 회장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다. 동 법률은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 활동과 재산 전반에 대해 관련되어 있지만 그 규정은 너무 일반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필요한 시행테크레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효력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오염의 심화와 위생상의 경고는 종전의 법률을 대체하는 두 번째 일반법인 대기와 합리적 에너지사용에 관한 1996년 12월 30일 법률을 제정하게끔 만들었다. 이 법은 대기오염에 관한 광의의 개념을 수용하고 “각자에게 자신의 건강을 해하지 않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원칙으로 세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환경법전 법률편 제 220-1조)<sup>1)</sup>. 다른 선언으로는 “대기 질은 국민의 공동유산”고 같이 다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상징적인 것이 있다. 1996년 법의 규정은 환경법전성의 첫 번째 Partie의 두 번째 Titre인 대기환경 부분에서 규정되어 있고(법률부분 제220-1조에서 228-2조), 두 번째 Partie는 온실효과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법률부분 L.229-1조에서 제229-24조). (프랑스 법전(Code)은 종래 산별적으로 존재한 관련 법률(législative)과 시행령(réglementaire)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크게 법률(art.L로 표시)과 명령(R로 표시) 부분으로 나누어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구성은 Partie-Livre-Titre-Chapitre-Section의 제목으로 나누어진다. 국문식으로 편-부-장-절로 번역하면 종래의 번역례(partie는 부와 어울리고, 장의 경우 Titre 보다는 Chapitre가 더 익숙하다)와 어감상 맞지 않아서 원문대로 적는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본다.)

대기오염으로부터의 보호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에 의해 기후온난화의 확대와 그 결과로 나타난 재앙들이 밝혀지고 이러한 기후온난화의 주요 원인의 방지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 때문이다: 오존층의 손상에 따른 온실효과.

2003년 7월 2일 법률은 온실효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정부가 오르도낭스(ordonnance)를 통해 취하도록 수권하고 있고 실제로 아주 분명하다: “기후온난화와 관련된 온실효과 증가의 방지와 위협예방은 국가적 우선과제로 인정된다”(L.229-1). 2개의 오르도낭스가 이러한 효과를 위해 발해졌는데 2004년 4월 15일과 2005년 10월 26일 오르도낭스이다(후술 참조).

1) “국가와 국가영조물(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영조물(법인) 및 사인은, 자신의 권한분야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각자에게 자신의 건강을 해하지 하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의 실행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관여한다. 이러한 공익적 활동은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감시하며, 저감하거나 소멸하는데 있으며 대기의 질을 보전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있다”

대기오염에 관한 프랑스 법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기후변화의 2종류의 오염, 원인을 구별하고자 한다. 우선 전통적인 오염의 경우와( I)와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오염(II)으로 나누고자 한다.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법과 공동체법과 국내법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전자는 종종 프랑스법의 직접적인 법원이 되어왔다.

## I. 전통적인 오염대책

### 1. 국제법과 공동체법상의 보호

#### (1) 국제법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첫 번째 주요한 선언은 1969년 유럽위원회(Conseil de l'Europe)에서 1968년 채택된 것이지만 구속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먼 거리의 국경사이의 대기오염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1979년 11월 13일 유럽공동체의 42개 국가가 서명하였고<sup>2)</sup> 프랑스는 1981년 이를 비준하였다. 제네바협약은 다양화된 오염원과 피해를 발생하기 이전에 먼 거리에 퍼가고 종종 중복되는 효력을 가지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약은 기초협약(convention-cadre)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계약국들은 가능한 최고의 기술력과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가진 대기질의 관리와 통제 시스템을 설치할 책임을 진다. 특정한 물질의 배출의 감소를 위해 명확한 만기일을 규정한 “유럽의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의 감시와 평가에 관한 구체적 프로그램(EMEP)”이 여러 추가의정서를 통해 후속적으로 나타났다.<sup>3)</sup>

마찬가지로 2001년 5월 22일 채택된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S's: les polluants organique persistants)에 관해 규정하는데, 12개 물질이 규제되고 있다: DDT, 다이옥신 등 분해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먼 거리로 이동하며 생체에 축

2) 생략.

3) 1985년 오슬로협약은 황의 배출감소에 관한 것이고 1988년 소피아 협약은 아산화질소의 감축에 관한 협약이다.

적되는 물질이다. 협약은 체약국에게 이러한 물질의 생산, 이용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례는 아주 예외적이라야 한다.

## (2) 공동체법

공동체법의 규정은 아주 풍부하다. 수많은 디렉티브(공동체지침, Directive)가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 나왔으며 가장 일반적인 공동체지침으로는 1996년 9월 27일의 “주변공기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지침은 유럽의 대기질의 보호와 유지전략의 기초를 제공한다. 국가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주변공기의 정기적인 평가, 지정 기일 내에 한계치(극한값, valeurs-limites)을 지키기 위한 영속적 조치의 조(수)정, 경계수위를 넘는 모든 사항의 공중에 대한 알람 등.

더 특수한 다른 협약으로는 자동차매연의 감소에 관한 것이 있다. 체약국에게 더욱 더 낮아지는 허용한계치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오염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거나 정기적인 기술적 통제를 도입하도록 입법을 접근하도록 하는 디렉티브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1998년 10월 13일 디렉티브는 2000년부터 유연휘발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소각 혹은 연소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을 줄이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이후 수많은 규정들이 개입되었고 2개의 중요한 디렉티브에서 통합되었는데 2007년부터 시행되는 대기, 물 그리고 토양에서의 배출오염 전반을 다루는 1996년 9월 24일 디렉티브와 폐기물 소각에 관한 2005년 9월 28일 디렉티브이다. 후자는 폐기물소각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재활용기술이 채택되어야 하고, 특히 이산화탄소(CO<sub>2</sub>)와 아산화질소(N<sub>2</sub>O)의 배출한계치, 배출의 점진적 감소를 위한 연간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한다.

## 2. 프랑스 입법상의 보호

프랑스 환경법은 기술한 1961년 일반법에서 흥미로운 지침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매우 제한되었다. 유럽법에 의한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프랑스에서의 법령제정(la réglementation)은 공동체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하는 데 있었고 공동체 지침을 그 지침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내법으로 변환시켜야했다. 프랑스의

법령규정은 오염에 관한 매우 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이 많아서 자연보호에 관련된 공동체 지침의 변환의 경우는 보다 덜 완비된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법의 주요법원이 되는 공동체법상의 법원 말고도 국내법규로는 합리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1996년 12월 30일 법률을 들 수 있다. 동 법률에서 선언하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공기를 마실” 권리는 헌법적 차원으로 접근되며, 환경헌법준장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각자가 건강하고 쾌적한(équilibre et respectueux de sa santé) 환경에서 살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동 법률은 사전예방(prévention), 사전배려(précaution), 정보(information), 오염원의 시정(correction à la source), 오염자비용부담(pollueur-payer)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매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양한 특별기관에 위임되어 있다. “오염 경보의무”와 “경보자(lanceurs d'alertes)”의 보호는 현재 논쟁중에 있는 주제이다.<sup>4)</sup> 경보의 경계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프레페(Préfet) (프랑스의 일반지방행정관청으로 중앙정부에서 분산화된 국가의 지역사무를 관장하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적 행위에 대한 적법성 통제에 프레페제소는 절차를 통해 참여한다)는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한 경우에 차량운행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것은 실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그 경계선이 어느 하루 혹은 다른 날에 따라 다르고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차량운행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거의 효율성이 없는 부득이한 조치이다.

매년 국가는 프랑스환경위생청(Agence français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environnement)의 자문을 거쳐 대기(大氣) 질(質)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보고서(Rapport sur la qualité de l'air)와 같은 에너지소비와 배출 명단목록(Inventaire)을 작성해야 한다. 사전예방과 사전배려원칙은 유럽연합이 정한 질적 대상, 제한된 가치와 경계기준에서 나온 감시와 통제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1996년 법률은 환경계획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각 레지옹(région) 집행기관(le Conseil régional)은 레지옹(의) 대기질계획(Plans régionaux pour la qualité de l'air)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동 계획은 오염물질의 목록을 작성하

4) C. Lepage가 2008년 2월 1일 제출한 “환경정보, 평가와 책임”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공중에 대한 정보 전달은 하나의 의무이며 과학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경보의무”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경보자”건강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위협감시로 인해 야기되는 직업상의 제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고,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원인과 치유책을 연구하고, 위험지역과 위험 활동을 정하며 권고안과 중요한 지침을 정한다. 인구가 25만이 넘는 밀집지역에서는 대기보호계획(Des plans de protection de l'atmosphère)은 필수적이며 그 목표는 오염의 집중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 수준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권한행정청은 특히 특정시설에 관한 현존 규정에 맞는 배출감소예방조치를 규정한다(arrêtent).

감시 및 통제네트워크(reseaux)가 설치되었는데, 파리지역(région parisienne)의 국가, 산업체 그리고 일드프랑스 레지옹(Région Ile-de-France)에는 Parif라는 협회(Association) 1979년에 설치되었다.

1961년에는 전문기관(une structure spécifique)인 대기관리청(Agence pour la qualité de l'air)은 상공업적 성격의 영조물이다. 1990년에 동기관은 보다 일반적 권한을 가지는 환경 및 에너지관리청(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에 합병되었는데, 공중에 대한 정보와 대기질의 감시업무를 담당하며, 준주세인 대기오염분담금(TGAP: la taxe parafiscale sur la pollution atmosphérique)을 징수한다. 동기관은 관련규정의 실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일조하며 유럽공동체 디렉티브의 전환(la transposition des directives communautaires)에 협조하고 있다.

세 번째 계획유형은 대기오염방지와 연관이 있는데, 도시정비계획(PDU: Plans de déplacement urbains)이다. 1982년 12월 30일 국내운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계획은 시행 테크레의 미제정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였다. 1996년 법률은 인구 10만이 넘는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동 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도시재정비계획은 관련된 코뮌의 지방의회에서 제안하고 채택하는데, 공공의견조사(enquête publique)을 거쳐야하고 매 5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계획은 사람과 상품의 수송, 교통흐름과 주차시설에 관한 일반운영방침(organisation générales)을 정하고, 교통흐름과 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관심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오염의 중대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된다: 대중교통의 강화, 무공해운송수단의 개발(특히 자전거)의 주장, “운실효과”로 인한 위협에 따른 초긴급성(d'extrême urgence) 등.

## II. 온실효과에 의한 오염

기후온난화와 관련한 위협의 증대에 대해 이제는 과학자들은 의견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고는 이미 1980년대부터 있어왔고<sup>5)</sup> 1988년 7월12일 UN총회결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는 인류의 공동관심사로 인식되었다. 같은 해에 UN정부간기후변화평가단(GIEC)(영어로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내에서는 UN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로 알려져 있다)이 설립되어 중요한 과학자들이 참석하였다. GIEC의 유능하고 독립적 평가는 만장일치로 인정받고 있다<sup>6)</sup>.

### 1. 국제법과 공동체법상의 보호

#### (1) 국제법

UN에서는 20년 전 부터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수차례의 국제협약을 마련해왔다. 첫 번째는 1985년 3월 22일 서명된 비엔나협약으로 유럽연합을 포함해 18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기본합의서로서 구속적이지 않으며 정보교환과 입법상의 조율(harmonisation)을 통해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추가적인 여러 프로토콜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1987년 9월 16일 서명된 몬트리올 협정에서는 보다 많은 세부규정에서 규제대상목록을 마련하여 그 생산과 소비를 감축하는 조치를 규정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은 1992년 5월 9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1992년 6월 리우 회담중에 서명을 거쳐 효력발생을 개시하였고 더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동 협약은 온실효과를 발생하는 가스(GES, 이하 온실가스) 전체와 관련된다. 서명국들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연의 기후체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중점목표를 정한다. 서명국들은 정기적으로 배출목록

5) 기후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는 1979년에 개최되었다.

6)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에 출간된 첫 번째 보고서는 경보를 알리고 있다. 제4차 보고서는 2007년에 나왔으며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

을 작성하고 자연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정해야한다. 최고기관은 당사국총회(Conférence des parties)<sup>7)</sup>로서 협약의 실행과 후속규정을 준비한다. 그중 유명한 것으로 1999년 12월 11일 서명된 교토의정서가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협약국들이 기후의 균형에 공통의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지만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 제1부속서(Annex 1)에 해당되는 선진 38개국은 2000년에 자국의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의정서는 “배출감축분(des unités de reduction des émissions)”이라 불리는 배출권을 국가 간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협정의) 준비단계가 개시되었고 국제적 차원의 배출권거래의 유효한 실행은 2008년에 개시되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2008-2012년 기간 동안 최소 5%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다.

5년의 약속기간에 따라 할당량이 정해졌다. 국내정책과 병행하여 이른바 신축적 메커니즘이 정해졌다: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 메커니즘과 배출권거래제도 등. 교토협약에 참여한 유럽연합은 이러한 쿼터제도 이미 참여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propre) (배출권)거래제도를 마련하였다.

## (2) 공동체법

유럽공동체차원의 규정들은 1990년대 이래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유럽공동체유럽이사회는 1993년 6월 24일 결정(décision)을 통해 이산화탄소(CO<sub>2</sub>)와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시 메커니즘을 마련하였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2000년 6월 29일 규칙(règlement)은 유럽공동체의 규제(réglementation)를 모트리올 의정(Protocole)과 교토의정서(Protocole de Kyoto)에 맞추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7) 1994년부터 기후변화를 다루는 12개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다.

다.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조기 실행하는 결정을 내렸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정하였다. 회원국 각국은 이전에 온실가스배출허가를 취득한<sup>8)</sup> 자국의 기업에 대해 일정한 우선 2005-2007년 3년간 다음으로 2008-2012년 동안의 할당량을 부여한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한 기준에 기초한 국가별 쿼터배분 계획(국가할당계획)은 위원회(Commision)에 이송되며, 위원회는 그 진정성을 검토한 후에 이를 채택하거나 기각한다.

할당량(les quotas)은 유럽연합의 기업 간에 이전될 수 있으며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할당량을 승인받으면 가능하다.<sup>9)</sup>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메커니즘에 구속 받지 않는다. 할당량의 회계(comptabilité)는 각국의 장부(des registres nationaux)<sup>10)</sup>에 등재되고 할당량을 소지한 각자는 계좌를 개설해야하고, 장부에 등록하는 것은 소 유권설정행위가 된다.(?)

아직 최종적인 답안을 발견하지 못한 흥미로운 문제는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가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공적지원(aide publique)이 경쟁에 대한 위협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공적지원은 특정기업이나 특정생산에 대한 배려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논쟁은 예민하고 많은 권한이 조약에서 규정한 특례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사회(Commission)에 주어졌다. 수년전부터 유럽연합 당국(par les instances de l'Union européenne)은 “녹색투자(investissement verts)”, 특히 2008년 1월 23일 이사회가 채택한 “기후계획(Plan climat)”<sup>12)</sup>에 일치하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모든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 2. 국내법상의 규제(réglementation)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지침(la directive)은 프랑스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

8) 환경의 보호를 위해 특정시설에 발급된 (배출권)허가의 실행은 (오염의) 배출의 허가를 대신하게 된다.

9) 2005년 10월에 할당량은 온두라스의 수력발전계획을 위해 이탈리아에 부여되었다.

10)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가 이러한 책임을 담당한다.

11) 2006년의 경우 지원은 전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관련 분야 대상이며 1270억 유로에 이르고,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의 전체 총액의 29%를 차지한다.

12) 2008-2014년의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의 지원에 관한 공동체의 윤곽을 정하는 계획이다.

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2004년 4월 14일 오르도낭스(l'ordonance)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의회의 입법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정부가 의회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위입입법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헌법상 요청된다)를 통해 구체화되어졌다(transposé).

동 메카니즘은 아래와 같다. 행정청은 총괄적인 배출상한을 결정한 다음 오염기업에 대해 허가권 다시 말해 할당량을 할당한다. 각 배출 기업은 배출권에 명시된 수준에 따른 가스배출 제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허용기준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 정해진 배출권 기준을 초과한 다른 배출 기업에 대해 잉여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다. 핵심은 유통되는 할당량의 숫자가 변동 없이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제는 환경법전 제2편 제2부, 대기환경(Air et atmosphère) 제4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229-1조 - 제229-24조).

#### - 계획수립(Planification)

2005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배출권의 할당하는 전국단위 계획(Un plan national d'affectation de quotas)<sup>13)</sup>이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프랑스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의 최대량을 정하고 있다. 동 계획은 유럽이사회(Commission européenne)에 공표 및 통치되었고 국사원 데크레(décret en Conseil d'Etat)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 동 계획상의 배출제한총량은 손댈 수 없으며 계획기간동안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 배출거래권의 부여

환경담당부처는 배출권거래시스템의 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각 시설업체는 국가가 정해진 기간 동안, 할당량을 사용하도록 한 배출허가(autorisation d'emettre)를 향유하며 매년 일부를 이전받는다. 이러한 할당은 2008년까지는 무상이며, 배당된 할당량의 일부(10%)는 무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럽연합이사회(Commission de l'Union européenne)의 동의 후 동일한 활동에 속한 기업은 공동으로 허가받을 수

13) 할당량(La quota)은 이산화탄소.

있고 여러 국가들 간에 국가별 할당량을 재배분하기 위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인큐베이터(bulle)”(?)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할당량을 관리하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 - 원상회복과 제재

매 년 마지막에 배출권 사용자는 CO<sub>2</sub> 환산 총배출량과 동일한 배출권을 집행하는 국가에게 상환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상환된 할당량을 “취소(annule)”한다(?). 만일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경우 배출권자는 국가를 통해 이를 취소하거나 시장에 이를 판매할 것인지 선택한다. 부여된 할당량에 미만 하는 상환의 경우 초과배출량 1톤(ton)당 1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떠한 기업으로서는 상환하기 전에 초과 배출 규모와 동일한 할당량을 상환해야 한다.

#### - 배출권거래시장(Marché de quotas)

배출권시장에 참여한 유럽연합의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과 법인은 배출권을 구매, 보유, 양도할 수 있고 국가에 반환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잉여이용자들이 배출할당량으로 구성된다. 2005년 배출권 거래시스템에 참여한 프랑스 기업들이 신고한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은 1억 3100만 톤이다. 1075개의 시설이 관련되어 있다. 기업이 하는 신고의 정확성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결정하며 매우 상세한 규제 사항들이 채택되었다. 인증기관에 의한 감시와 평가가 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매우 간략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환경법전은 배출권을 “동산(?)(*bien meubles*)”으로 규정하고 양도가능하다고 인정한다.<sup>14)</sup> 이러한 행정적 허가에 부여된 (배출권의) 재산적 성질은 식별할 수 있고 분리할 수 배타적 관계의 용법과 대상을 갖춘 실체기 되는 배출권을 안정시킨다. 배출

14) “배출권은 동산이며 국가목록상의 배출권 취득자의 계정에 등록해만 구체화된다. 배출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계정이체를 통해 이전되며, 배출권은 그 취득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 양도가능하다” (법률 제 229-15조)

권의 유통성은 배출권 구매요청이 청약에 우선하고 “오염권(droit à polluer)”의 구입과 판매가 매우 특별한 이러한 배출권시장의 정당화는 예상되는 생태적 이점이 있다: (생태적) 안정이 첫째이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근년에 제기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21세기가 넘어야 할 중대한 도전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고 그 도전은 국경과 시간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개혁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규정들이 가속의 리듬을 이어간다면 너무 초기단계의 조치들은 불충분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유일한 효율성 있는 기회는 과학자들의 객관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더욱 더 열정적으로 정책을 강화하는데 총력 하도록 공공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인터넷정부”는, 다른 면에서 위협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명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의) 이용자-발신자-수신자는 이러한 “지식사회(société des savoirs)”와 실망스럽고 불안한 세기의 강렬한 열망인 지식-욕구-권력의 동맹(alliance)에 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